

1973년 건설업통계조사

조사표기입요령서

통계청자료실



B000448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I . 조사의 개요	3
1 . 조사목적	3
2 . 조사연혁	3
3 .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3
4 . 조사실시기간	3
5 . 조사범위 및 대상	3
6 . 조사단위	5
7 . 조사사항	5
8 . 조사방법	5
II . 조사항목의 해설 및 기입요령	6
1 . 일반적인 유의사항	6
2 . 항목별 기입요령	7

< 부 록 >

I . 산업분류 (건설업편)	23
II . 공중분류해설	31

I . 조사 의 개요

1 . 조사 목적

우리 나라 건설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건설정책의 수립 및 그의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수집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 조사연혁

한국 산업은행에서 68~70년까지 3년간 건설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1972년 조사부터 당원으로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3 . 조사기준 시점 및 기간

가 조사 기준 시점 : 1973. 12. 31 현재

나 조사 기준 기간 : 1973. 1. 1 ~ 1973. 2. 31

4 . 조사 실시 기간

가 . 건설부 장관 면허 업체 : 1974. 1. 1 ~ 1. 31

나 「가」 이외의 사업체 : 1974. 6. 16 ~ 8. 15

5 . 조사 범위 및 대상

산업상의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970. 3. 13 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분류 5 건설업」이며 1973년 건설업 통계조사에시의 조사대상은 건설관계 면허업체이다.

✓ 가 . 건설부 장관 면허업체 (토건업체)

✓ 나 . 상공부 장관 면허업체 (전기공사업체)

다. 내무부 장관 면허업체 (수도공사업체)

라. 체신부 장관 면허업체 (전신, 전화설비공사업체)

1) 건설업의 정의

계약 및 수수료 아래 또는 자기계정(직영)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로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미 기업체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체 단위도 포함되며 시공자가 정부이든 민간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건설공사라 함은

가)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정착하는 공작물(工作物) 및 이들의 부대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해체, 제거 및 이설(移設)공사

나) 토지, 항로(航路) 유로(流路) 등의 개량 혹은 조성공사

다) 전기공사, 관공사(管工事) 등의 기계 장치의 설치, 해체 혹은 이설(移設)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과 타산업간의 관계

가) 금속, 비금속,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試掘)갱도 굴착(坑道掘鑿) 천공(穿孔) 작업등을 주로하는 도급업체는 「대분류 2 광업」에 분류된다.

나) 기획, 조사, 측량, 설계를 주로하는 사업체는 8404 (토목, 건축 및 기술서어비스업)에 분류된다.

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임대업, 대지업, 중개업, 관리업 등은 「소분류 831 부동산업」에 분류된다.

6.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건설업 사업체로 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 사업체라 함은 비교적 영구적인 사무소(본점, 지점, 개인 기업주의 자택 등)를 가지고 그곳에서 건설 활동을 위하여 입찰, 기획 감독 및 도급계약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현장은 건설업의 사업체로 보지 않고 그 현장을 관할하는 사업체에 포함된다.

7. 조사 사항

가. 사업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나. 고용급여액에 관한 사항

다. 공사비 및 공사시공액에 관한 사항

라. 공종별 및 지역별 시공액에 관한 사항

마. 유형 고정 자산에 관한 사항

바. 건설 장비에 관한 사항

사. 재고 자산에 관한 사항 등

8. 조사 방법

타계식 조사방법과 자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한다.

작성된 조사표중 1매는 사업체에 비치하고 1매만 제출한다

II 조사항목의 해설 및 기입요령

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전한 조사표를 얻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조사표의 작성에 앞서 각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와 기
요령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충실히 기입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표는 실사 완료후 분류, 심사, 집계등 여러작업에 계속
용될 것이며 영구 보존할 것이므로 조사표의 기입에 있어
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기입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 . . . 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특히 4와 6, 0과 6, 3과 5, 7
9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다. 금액란은 금액 단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천원,
원, 십만원 . . . 등과 같이 숫자하나 하나의 자리를 표
표에 미리 정해 놓았으니 이에 맞추어 정확히 기입한다.
라. 천원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하고 천원에 미달되는 금액은
0으로 표시한다.

마. 해당 사항이 없는 란에는 사선 (\) 을 긋는다.

바. 기입한 사항을 고칠 때에는 잘못된 곳에 두줄을 긋고
바로 위에 옳은 것을 깨끗이 기입한다.

사. 조사표 중에서 「※」표와 「☆」표가 있는 칸은 기입하지 않는다.

2. 항목별 기입요령

1) 사업체 명칭 및 소재지

가) 사업체 명칭이라 함은 그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기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소로서 시·도명 부터 번지수,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예시와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행정단위명을 반드시 0으로 둘러싼다.

예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동 2가

부산직할시 시

도 군 읍·면 동

3번지 5호

(1통1반)

라) 전화 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직형태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의 법적조직 형태를 말한다.

나) 이조사에서는 주식회사,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영업주체(기

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먼저 규명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인가 기타 법인인가를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에 0표를 한다.

다) 법인이란 함은 상법, 민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의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기타 법인에는 주식회사 이외의 모든 법인을 포함시킨다.

라) 개인, 즉 개인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하는 것이나 2인 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 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가) 이 항목은 법인사업체에 한하여 기입한다.

나) 1973. 12. 31 현재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4) 면허 종류 및 도급 한도액

가)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건설면허 종류별로 면허 번호를 () 속에 기입하고 그 옆에 73 년도의 도급한도액을 기입한다.

나) 건설부장관의 일반면허 (토건, 토목, 건축) 소유 업체는 해당 면허 종류에 0표하고 번호를 기입한다.

5) 종업원수

종업원이라 함은 그사업체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외부에

서, 일을 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동경영자와 주주는 제외한다.

가) 피고용자수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간에 의하여 임금,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고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과 사무 및 기타로 나누어 노무자를 제외한 피고용자를 매월말 또는 급여 계산일 현재로 가입하되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② 도급 공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 업체의 종업원은 도급공사업체의 종업원에서 제외한다.

③ 생산종업원이라 함은 건설공사 및 이에 직결된 현장 작업 종사자와 보조작업 종사자를 말한다.

건설공정의 제단계를 기록 또는 추진 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험검사 및 작업감독 등은 여기에 포함하나 현장에서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 생산종업원은 다시 기술자 기능공 노무자로 나눈다.

㉠ 기술자

건설업법 제 17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갑류, 을류, 병류)를 받은 자로서 동법 제 12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유효한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기능공

건설업법 제 23 조에 의하여 건설기능공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㉔ 노무자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종사하는자로서 기술자와 기능공
을 제외한 모든 생산종업원 (日給을 받는자)을 말한다.
각 공사별로 투입된 연 인원의 월별합계를 연 인원란
에 기입하고 연 인원을 공사별 작업일수의 월별합계로
나눈 1일평균 인원수를 1일평균 (1日平均)란에 기입
한다.

〔주 〕(1) 건설업법제 17 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면허)

㉑ 건설업에 종사할수 있는 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기술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자라야 한다.

㉒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을 토목, 건축, 기계로 기술
등급을 갑류, 을류, 병류로 구분된다.

(ii) 동법 제 12 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업자는 건설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의 공사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그 공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하
하여야 한다.

(iii) 동법제 23 조 (건설기능공의 인정) 건설부장관은 건설
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능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도를 인정할수 있다.

④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피고용자로서 생산(건설)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적, 전문적, 서기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포함한다.

「주」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자는 그 근무시간수에 의하여 정한다.

⑤ 휴업한 달에는 피고용자수 앞에 반드시 「△」표를 하여야 한다.

⑥ 피고용자의 계는 조업한 달의 종업원수를 합제한것을 말한다.

나) 사업주 및 무급 종업원

① 사업주(출자자 포함)와 그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 또는 노무에 통상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명의상으로만 사업주이고, 통상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취업하지 않는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② 사업주의 가족이더라도 상시(常時)근무에 종사하고, 이에 대한 임금 또는 봉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자는 피고용자에 포함시킨다.

6) 연간 급여액 및 복리후생비

가) 급여액

① 급여라 함은 조사기준 기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를 가리지 않고,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급여, 즉 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로 지급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지급여액은 여기서 제외하고,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킨다.

- ② 1973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1973년 중에 지급한것은 제외하고, 반면에 1973년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미분된 것은 포함한다.
- ③ 급여액은 세금, 저금,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 즉 업체에서 부담한 총액을 기입하며, 따라서 피고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적립금 등을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를 업체에서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이부담액도 급여액에 가산한다.
- ④ 급여액은 생산종업원 급여액, 사무 및 기타 종업원 급여액으로 구분하고, 생산종업원 급여액은 이를 다시 기술자 기능공 및 노무자에 대한 급여액으로 세분하여 기입한다.

나) 복리후생비

종업원에 대한 급여 이외에 위생, 보건, 위안, 수양등 종업원의 사회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1973년간에 지출한 제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 등도 여기에 포함한다.

즉 퇴직수당, 양로연금, 종업원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운동시설, 영화, 위안 여행, 운동회 개최 등을 위한 제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킨다.

7) 총 공사액

국내 건설공사시공액, 해외건설공사 시공액 및 하도급공사 수입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국내 건설공사 시공액

① 조사기준기간에 신설 및 증·개축을 위하여 시주(施主)로부터 직접 수주한 하도급공사 시공액과 자기계정으로 자체의 건물 또는 기타 구축물 등에 행한 직영공사 시공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하도급공사 시공액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영기업체, 국내외국기관, 민간발주공사별로 다시 세분하여 기입한다.

② 공사의 계약년도, 공사대금의 취하(取下)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73년중에 시공한 금액을 기입한다.

(취하액이나 계약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할것)

③ 국내 건설공사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내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④ 다른 사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행한 시공분은 포함하나 다른 사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하도급공사 수입액에 제상한다.

나) 해외건설공사 시공액

조사기준 기간에 해외에서 시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문직별공사로 나누어 시공액을 기입한다.

전문직별공사라함은 벽돌공사, 미장공사, 철강공사, 석축공사, 도장공사, 전기통신공사, 배관공사, 내장공사, 방수공사 등을 말한다.

다) 하도급공사 수입액

다른 사업체로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고 시공해준 기성고분에 대하여 이의 대가로 수입한 공임(工賃)을 기입한다.

라) 합 계

이 항목은 조사기준 기간중에 그 사업체가 건설활동의 결과로 수입한 총액으로서 국내건설공사 시공액의 계, 해외건설공사 시공액의 계, 하도급공사 수입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8) 공사비

1973년간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사용(소비)한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공사비를 원재료비, 연료비, 수리 및 유지비, 장비임차료 및 하도급 공사비로 구분 조사 한다.

가) 원재료비

- ① 조사기준기간에 공사 시공을 위하여 실제로 투하(사용)된 원재료(보조재료 포함)의 금액을 운임을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기입한다.
- ② 다른 사업체에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여 하도급공사를 시킨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서 조사기준기간에 시공에 사용한 원재료비는 도급공사업체의 원재료비에 포함되며 하도급공사업체의 원재료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연료비

조사기준기간에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사용금액을 기입하며 금액은 구입가격에 의한다.

다) 수리 및 유지비

- ① 건설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 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으로서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가액을 기입한다.
- ②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수리 및 유지비중 회계상 경비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만을 여기에 계상한다는 점이며, 건물 및 구축물의 증축이나 기계기구등의 개조로 그자산의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의 가치증가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에 계상한다.

라) 장비임차료

조사기준기간중 외부로 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임차료를 기입한다.

마) 하도급 공사비

- ① 다른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 조사기준기간에 시공한 기성고(既成高)분에 대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할 공임(工賃)을 말한다.
- ② 하도급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의 기사용분(既使用分)에 대한 가액은 도급공사업체의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바) 합 계

원재료비, 연료비, 수리 및 유지비, 장비임차료, 하도급공사비의 합계를 기입한다.

9) 연초·연말재고액

가) 연초 재고액은 1973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3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대상물(원재료, 연료, 저장품)의 실재장소에 관계없이 그 사업체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기입한다.

나) 재고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격에 의하되 이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기입한다.

다) 하도급 받은 공사를 위하여 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의 재고등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공종별 국내공사 시공액

이 항목은 「조사항목 7 총공사액」중의 「(1) 국내건설공사시공액」을 공종별로 나누어 연간에 완공된 공사에 대하여 완공공사액(총도금액), 연초기성고를, 미완공공사에 대하여 연말기성고, 연초기성고를 기입한다.

가) 공종명(工種名)은 계약단위로 하며 각공사건별로 조사표상에 미리 분류하여 놓은 공종분류에 따라 사업체의 시공품(공사)을 분류한다.

(부록 II. 「공종분류해설」을 참조하여 그 사업체의 시공품의 공종분류에 각별히 주의하여 잘못이 없도록 한다. 특히 전문직별 공사에 유의할 것)

나) 건 수

계약년도에 관계없이 시공실적이 있었던 공종별 건수(件數)를 기입한다.

다) 연간시공액

① 계약년도, 공사대금의 취하(取下) 여부에 관계없이 73년중 시공한 금액을 기입하며 연간시공액의 합계는 조사항목 7의 (1) 국내건설공사 시공액의 제외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한다.

- ② 연간시공액은 공사전별로 완공공사인 경우는 이의 총공사비(도급액)에서 연초기성고를 공제하고, 미완공공사인 경우는 연말기성고에서 연초기성고를 공제하여 같은 공종의 합계를 낸 것이 된다.

라) 완공공사

1973년 연간에 완공(준공)되어 시주(施主)에게 인도 완료한 공사를 말한다

① 총도급액

완공된 공사의 금액을 기입한다. 공사의 착공이 1973년 이전인 경우에도 착공으로 부터 완공까지의 총공사비(도급공사인 경우 이익금 포함한 총도급액)를 기입한다.

② 연초기성고

1973년 이전에 공사가 착공되어 73년중에 완공된 경우에 73.1.1 현재 진척된 기성고(72년말까지의 기성고)를 기입한다. 따라서 73년중에 착공하여 73년중에 완공된 경우에는 이 항목은 해당이 없게 된다.

마) 미완공공사

1973.12.31 현재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74년으로 계속되는 공사를 말한다.

① 연말기성고

1973.12.31 현재 공사의 진척된 기성고(既成高)를 기입한다.

② 연초기성고

공사착공이 73년 이전인 경우에 73.1.1 현재 진척된 기성고(72년말까지의 기성고)를 기입한다.

- ③ 기성고(既成高)의 평가는 총공사비(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이익금포함)에 공사진척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공사진척율은 단위공사에 대하여 이미 투입한 공사비를 공사완공시까지의 총 소요자금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 $$\text{기성고(금액)} = \text{도급계약액} \times \text{공사진척율}$$

$$= \text{도급계약액} \times \frac{\text{기투입공사비}}{\text{소요자금총액}}$$

※ 기재예

- ① 10억짜리 공사를 도급받아 73년중에 착공하여 73년중에 완공되었을 경우

(1) 연간시공액	완공공사		미완공공사	
	(2) 총도급액	(3) 연초기성고	(4) 연초기성고	(5) 연말기성고
1,000,000	1,000,000	/	/	/

- ② 상기 공사를 73년중 착공 하였으나 4억이 미기성되어 74년으로 이월되는 경우

600,000	/	/	/	600,000
---------	---	---	---	---------

- ③ 상기 공사를 72년착공(73년이전) 하였으나 7억이 73년으로 이월되어 73년중 완공되었을 경우

700,000	1,000,000	300,000	/	/
---------	-----------	---------	---	---

- ④ 상기 공사를 72년 착공하여 72년에 20% (2억) 을
시공하였고 73년에 40% (4억) 을 시공하여 40%
(4억) 의 공사가 74년으로 이월되는 경우

1) 연간시공액	완 공 공 사		미 완 공 공 사	
	(2) 총도급액	(3) 연초기성고	(4) 연초기성고	(5) 연말기성고
400,000			200,000	600,000

1) 유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운반구 및
선박등을 말한다.

가) 연말총액

1973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격을 기입한다.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현실적일 때에는 시가에 의한 추정액
을 기입한다.

나) 연간 취득액 및 증·개축액

- ① 1973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및 증 개축을 위
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기설 (既設) 의 유형고
정자산의 기능을 보전 (保全) 하기 위한 부분품의 대체
(代替) 와 수리에 지출된 경상경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조사항목 8 공사비」의 「(3) 수리 및 유지비」에 포함
시킨다.

② 취득액의 평가는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운임 및 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평가하고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 부터 양수(讓受) 받은 것은 양수 당시의 시가로 환산 평가한다. 또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1973 년간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③ 자산재평가에 의한 명목상의 장부가액의 증가는 제외한다
다) 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조사기준 기간에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액을 기입하고 같은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에 양도하였거나,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 원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수 있었던 시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라) 연간 감가 상각액

① 조사기준 기간중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를 자산 종류별로 상각액을 기입한다.

② 감가 상각을 직접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계정으로 부터 연중공제한 금액을, 간접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충당금에 연간 가산된 금액을 기입한다.

마)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① 토 지

사무소의 대지, 사업체의 사택부지, 건축예정부지 및 운동장과 이들을 위한 토지개발비도 이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② 건물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의 부속시설도 포함시킨다.

③ 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모든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즉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도, 송유관, 우물, 조원 등

④ 중 기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치

⑤ 차량, 선박 및 운반구 (건설중기 제외)

자동차, 철도차량, 우마차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 운반구 및 항공기등

⑥ 공구, 기구 및 비품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가치가 1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만을 기입한다.

12) 지역별 시공액

가) 국내건설공사 시공액을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전문직별공사로 나누어 시공 지역별로 기입한다.

나) 공사 시공액의 지역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것은 공사비의 지역별 투하액 비율등으로 배분하여 계산 기입한다.

다) 지역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전문직별공사의 각 합계는 「조사항목 10, 공종별 국내건설공사 시공액중의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문직별공사의 소계 (511099, 512099, 529999)와 반드시 각각 일치하여야 하며 (4)제 (건축공사+토목공사+전문직별공사)의 지역별 시공액 합계는 「조사항목 7의 (1) 국내건설공사시공액」의 계와 「조사항목 10, 공종별 국내건설

공사시공액」의 (1)년간시공액의 합계 (999999)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13) 주요건설기계 보유대수

- 가) 1973.12.31 현재 건설 활동을 위하여 그 사업체가 보유 (현장에서 쓰이고 있던, 수리중이던) 하고 있는 가동 가능한 기계 및 장비의 대수를 기입한다.
- 나) 타 사업체에 대여한 장비는 포함하나 타업체로부터 임차한 장비는 제외한다.

적 요

기재된 수치가 가결산에 의거 하였거나 정확한 자료가 없어 추정기입하였을때는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또 결산자료 이용 가능시기등을 기입한다.

< 부 록 I >

산 업 분 류

< 일 려 두 기 >

이 산업분류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1970.3.13 개정판) 중 「대분류 5. 건설업」을 전채(轉載)한 것이다.

[분류표]

대분류 5 ; 건설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51. 종합건설업 (綜合建設業)	511. 건축 건설업	5110. 건축 건설업
	512. 토목 건설업	5120. 토목 건설업
52. 전문직별공사업 (專門職別工事業)	521. 벽돌공 및 미장 (美匠) 공사업	5210. 벽돌공 및 미장 공사업
	522. 목공공사업	5220. 목공공사업
	523. 철강공사업	5230. 철강공사업
	524. 석축(石築) 타일, 기와 공사업	5240. 석축 타일 기와 공사업
	525. 도장(塗裝) 공사업	5250. 도장공사업
	526. 전기, 통신공사업	5260. 전기 통신 공사업
	527. 배관(配管) 공사업	5270. 배관공사업
	529. 기타의 전문직 공사업	5290. 기타의 전문직 공 사업

대분류 5. 건설업

계약 및 수수료아래 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종합사업과 전문적인 직별 공사를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미기업체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체 단위도 포함되며 시공자가 정부이든 민간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건설기술용역업무는 제외된다.

중분류 51. 종합건설업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종합한 건설업을 말한다.

511. 건축 건설업

5110 건축 건설업

계약 또는 수수료 아래서 주택, 「아파트」, 공업, 상업 및 공공건물과 같은 건물의 건설(신축, 증축, 변형, 개축 포함) 및 해체업을 말한다. 자기소유 건물의 유지, 보수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주택, 「아파트」, 농가, 공공건물, 상가「아파트」, 발전소, 특수공장, 병원, 학교, 강당, 체육관, 기념탑등의 건설업, 건축물 파괴업 및 수선업.

512. 토목 건설업

5120 토목 건설업

철도, 「터널」, 지하철, 활주로, 고속도로(파이프 라인)가설 경기장, 항만, 항만구조물(부두, 안벽, 물양장, 방파제등), 준설

공사등과 같은 토목공사 (개축, 변형, 신축, 파괴)에 주로 종사하는 토목 건설업을 말한다.

○ 입체교차로, 보도, 교량, 철도, 「터널」, 지하철도, 고가교, <모노레일>, 고속도로, 도로포장, 비행장, 공원, 경기장, 상하수도, 배수시설, 하천공사, 제방공사, 관개공사, 수영장, 토지개간, 유전 및 염전공사, 부두-불양장, 방파제, 매립, 항구 및 수로해저전신, 해저「터널」, 「독크」, 축조, 「댐」, 「케이블」과 준설등의 공사업

중분류 52.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은 건설계획공사 목적물의 일부분만을 도급 또는 하도급에 의하여 구성하는 건설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직별 공사업자는 종합건설도급업자로부터 재도급 받아 공사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직접 도급에 의한 공사를 하는자를 말한다.

521. 벽돌공 및 미장공사업

5210 벽돌공 및 미장 공사업

「부록크」, 벽돌쌓기 및 미장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벽돌공사업, 미장공사업

522. 목공 공사업

5220 목공 공사업

형틀조립 및 제작, 목조건물조립등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

를 말한다 .

○ 목공 공사업

523 . 철강 공사업

5230 철강 공사업

철골가공 및 조립 , 철근가공 및 조립 , 철판가공 및 조립 , 「 샷슈 」공사 , 비상계단 공사 , 합석공사등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 철골가공 및 조립 , 철근가공 및 조립 , 철판가공 및 조립 , 「 샷슈 」공사 , 「 샷터 」공사 , 비상계단공사 , 주강공사등의 공사업 .

524 . 석축 (石築) , 「 타일 」 , 기와공사업

5240 석축 「 타일 」 , 기와공사업

석축 및 석적 , 「 타일 」 , 기와 및 「 스테이트 」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

○ 석축 , 석적 , 「 타일 」 , 기와 , 「 스테이트 」등의 공사업 .

525 . 도장 (塗裝) 공사업

5250 도장 공사업

「 페인트 」 및 「 시멘트 」 뿜어붙이기 (吹付)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

○ 「 페인팅 」공사업 , 「 시멘트 」뿜어붙이기공사업 , 단청공사업

526 . 전기 , 통신공사업

5260 전기 , 통신공사업

외선 및 내선, 전화도선, 신호장치등의 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송배전선로, 전기설비, 전기배선, 「에온」장치, 전화선로 유선무선 전화기계 설치, 전신기계설치, 신호장치 화재경보기 설치 등의 공사업

527. 배관 공사업

5270 배관 공사업

위생난방, 보일러 설치, 욕실, 열절연공사 등에 주로 종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위생난방, 보일러설치, 욕실, 열절연, 온습도장치, 건조장치, 급배수장치, 냉동장치등의 공사업.

529. 기타의 전문직 공사업

5290 기타의 전문직 공사업

내장, 도배, 유리, 방수, 온돌, 정원, 「콘크리트」, 잠수 및 기타 전문직 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실내장식, 도배, 유리, 온돌, 방수, 「콘크리트」, 목재건구, 마루, 창호, 잠수등의 공사업, 조원업.

< 부록 Ⅱ >

공 종 분 류 해 설

< 부 록 Ⅱ >

공 종 분 류 해 설

< 일러두기 >

- ① 공종분류는 1973년 건설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 5 건설업』의 산업 세분류를 각 건설 시공품의 용도에 따라 33개의 공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중분류	세분류
51. 종합건설업	5110. 건축 건설업
	5120. 토목 건설업
52. 전문직별공사업	5210. 벽돌공 및 미장(美匠)공사업
	5220. 목공 공사업
	5230. 철강 공사업
	5240. 석축(石築), 『타일』, 기와공사업
	5250. 도장(塗裝) 공사업
	5260. 전기 통신공사업
	5270. 배관 공사업
	5290. 기타의 전문직 공사업

- ② 『5120 토목건설업』중의 부대 건축공사(附帶建築工事)는 전부 『5110 건축건설업』에 분류한다.
- ③ 건축물의 분류단위는 동(棟)이며 하나의 동이 2종이상의 용도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의 건평(建坪)을 점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거주용(居住用)으로 점용(占用)되어 있는 건평이 연건평(延建坪)의 20%이상일 때에는 저주산업 병용건물에 분류하고 20%미만일 때에는 타(他)에 분류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용도가 변하는 건축물은 조사기준 시점에서의 용도에 의하여 분류한다.
- ④ 별도 설명이 없는한 기존시설의 해체(解體), 제거(除却)이설(移設), 유지보수(維持補修) 또는 재해복구(災害復旧)공사는 해당 시설의 공사에 분류한다.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工種名)	비 고
5110 건축건설업	511001	주거용및거주 산업비용 건 축물공사	<p>거주 전용 건축물과 전적으로 거주에 사용되는 건축 및 산업 용과 주거용이 결합된 건축물로 서 거주에 사용되는 부분의 전 평이 연건평(延建坪)의 20% 이상인 경우의 건축물공사.</p> <p>○ 주택, 기숙사, 합숙소등과 이들의 부속 건축물 및 공장, 상점, 사무소, 은행, 다방, 회사, 이발소, 미용원, 병원, 영화관등의 건축물로서 거주에 사용되는 부 분의 전평이 연건평의 20%이상 을 차지하면 여기에 분류한다.</p>
	511002	상업 및 서 어비스용 건 축물공사	<p>상업용이란 『한국표준 산업분 류』의 대분류『6, 도, 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 축물을 말하며 서어비스용 건축물이 란 대분류『8, 금융, 보험, 부동산 업 및 용역업』과『9, 사회 및 개인 서어비스업』에서 중분류『91, 공공행정 및 국방』용 건물과 중 분류『93, 사회서어비스업』중의 소분류『931, 교육서어비스용』건물</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1003	광공업 및 건설업용 건 축물공사	<p>과 중분류『96. 국제 및 외국기 관』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p> <p>○ 『도매업』, 『소매업』, 『 음식숙박업』용 사무소, 점포 작 업장, 창고, 차고등의 건축물 및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업』, 『용역업』, 『기계장비임대 업』, 『위생서비스업』, 『조선 및 과학연구기관』, 『의료보건기 관』, 『사회복지기구』, 『기업전 문 및 노동단체』, 『오락문화서 비스업』, 『개인 및 가계서비 스업』용 사무소, 작업장, 창고 차고등의 건축물.</p> <p>『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2. 광업 및 채석업』, 『3. 제조업』, 『5. 건설업』에 사용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 『광업』, 『채석업』, 『제 조업』, 『건설업』용 사무소, 공 장, 작업장, 창고, 차고등의 건축 물.</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1004	공무 문교용 건축물공사	<p>※ 『서어비스업』에 속하는 수리, 재생업용 건축물은 511002에 분류한다.</p> <p>『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91. 공공행정 및 국방』과 소분류 『931. 교육서어비스업』과 중분류 『96. 국제 및 외국기관』에 사용되는 건축물.</p> <p>○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 경찰, 주한외국공관과 국, 공사립의 각종교육 기관의 사무소, 창고, 작업장, 차고등의 건축물.</p>
	511005	공익사업용 및 기타 건 축물공사	<p>『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4. 전기, 가스, 수도사업』과 『7. 운수보관 및 통신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대분류 『1. 농업, 임업, 수렵업 및 어업』 및 기타위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물</p> <p>○ 『전기업』, 『가스업』, 『수도사업』, 『운수업』, 『보관업』, 『통신업』, 『농업』, 『임업』, 『어업』용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차고, 양축사등의 건축물.</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20 토목건설업	512001	치산치수 (治山治水) 공사	<p>하천공사 (河川工事), 사방 (砂防) 공사, 치산 (治山) 공사, 해안 제방·해안침식대책 (海岸提防·海岸侵蝕対策) 공사.</p> <p>예 : 하천의 개수공사, 하천의 유지공사, 하천의 재해복구공사, 수문 (水門) 설치공사, 기계장치 관계공사 기타의 하천공사</p> <p>사방조림 (砂防造林) 공사, 사태방지공사, 부대사방 시설공사, 사방시설의 재해복구공사, 치산공사, 치산시설의 재해복구공사, 부대치산 시설공사, 해안제방공사, 해안침식 대책공사, 고조 (高潮) 대책공사, 진파 (津波) 대책공사, 해안시설의 재해복구공사, 기타의 해안제방·해안침식 대책공사.</p> <p>※ 하천의 준설 (浚渫) 공사는 512014에, 하천의 유지공사 중의 『땀』공사는 512012에 운하공사는 512017에 분류하고 부대건축공사는 511005에 분류한다.</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2002	농림수산시설 공사 (農林水 産施設工事)	<p>농지 : 농도·초지·농업시설공사 (農地·農道·草地·農業施設工事) 개간·간척공사 (開墾·干拓工事), 임도 (林道) 공사, 어·어초·양 식시설공사 (漁港·漁礁·養殖施設 工事)</p> <p>예 : 관개배수 (灌溉排水) 공 사, 객토 (客土) 공사, 기타 토지 개량공사, 농도공사, 농지보존공사, 농지농업의 재해복구공사, 펌프· 수문설치공사, 기타의 기계장치 관계공사, 개간용농도 (農道) 공사, 개간용배수 (排水) 시설공사, 개간 용 수원 (水源) 시설공사, 방재 (防 災) 시설공사, 기타의 개간공사, 제방공사, 간선수로 (幹線水路) 공 사, 펌프·수문설치공사, 기타 기 계장치 관개공사, 내부개담 (內部 開閘) 공사, 재해복구공사, 임도 (林 道) 공사, 어항수축공사, 상옥 (上 屋), 급유시설 (給油施設) 공사, 양식장 설치공사, 기타 어항 시 설공사,</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부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2003	도로(道路) 공사(도로교량『터널』공사 제외)	<p>※ 어항구역내의 해안제방공사는 512001에, 수원(水源)시설공사중의 『땀』공사는 512012에, 부대건축공사는 511005에 분류한다, 개간용 농도가 영구적인 도로일 때에는 512003에 분류한다.</p> <p>예: 토사도(土砂道) 공사, 쇄석도(碎石道) 공사, 역청(瀝靑) 『마카담』도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도공사, 『Sheet아스팔트』도공사 『아스팔트』유제 포장도공사, 『시멘트 콘크리트』도공사, 궤(塊)포장도공사, 도로의 재해복구공사, 도로의 수리·유지공사</p>
	512004	도로용교량(道路用橋梁)	<p>※ 도로용교량, 고가도로, 육교, 입체교차로 공사는 512004에, 도로의 포장공사는 512016에, 부대건축공사는 511005에, 지하도·도로용 『터널』공사는 512017에 분류한다</p> <p>예: 목교(木橋) 공사, 콘크리트교공사, 석교(石橋) 공사, 고가</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공사	<p>도로 (高架道路) 공사, 육교 (陸橋) 공사, 입체교차로 (立體交叉路) 공사, 교량의 재해복구공사, 교량의 보수유지공사, 부대시설공사.</p> <p>※ 철강교 (鐵鋼橋) 공사는 512013에, 부대건축공사는 511005에 분류한다.</p>
	512005	항만·공항 (港灣·空港) 시설공사	<p>예: 수역시설 (水域施設) 공사, 외각시설 (外殼施設) 공사, 급유시설 (給油施設) 공사, 임항교통시설 (臨港交通施設) 공사, 항해보조시설공사, 하역시설공사, 여객시설공사, 보관시설공사, 항만후생시설공사, 시설의 재해복구공사, 기타 항만시설공사.</p> <p>활주로 (滑走路) 공사, 관제시설 (管制施設) 공사, 조명시설공사, 급유시설 (給油施設) 공사, 격납고 (格納高) 시설공사, 시설의 재해복구공사, 시설의 유지, 개수공사, 기타 공항시설공사.</p> <p>※ 항만구역내의 해안보조공사는 512001에 준설공사 (浚渫工事) 는 512014에, 임항교통시</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2006	철도·궤도 (鐵道·軌道) 시설공사	<p>설 중의 철도시설공사는 512006 에 , 부대건축공사는 511005 에 분류한다 .</p> <p>활주로의 포장공사는 512016 에 , 통신시설공사는 512007 에 , 공항발딩 등과 같은 건축공사는 511005 에 분류한다 .</p> <p>예 : 노선시설 (路線施設) 공사 , 정거장시설공사 , 방재시설 (防災施設) 공사 , 전기시설공사 (발전·송전시설 제외) , 신호 (信號) 보안 (保安) 시설공사 , 정비시설공사 , 시설의 재해복구공사 , 기타 철도 , 궤도시설공사 .</p> <p>※ 철도용 『터널』공사는 512017 에 , 철도용 철강교 공사는 512013 에 , 통신시설공사는 512007 에 , 역사 (駅舎) ·정비공장 등의 건축공사는 511005 에 분류한다 .</p>
	512007	전신·전화 우편시설공사	<p>예 : 전신·전화로선공사 , 전신·전화기계 설치공사 , 무선전신기계설치공사 , 유선방송 (有線放送)</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2008	상수도시설공사	<p>시설공사, 기타 전신·전화·우편 시설공사.</p> <p>※ 전신전화국, 우편국 등과 같은 건축공사는 511005에 분류한다.</p> <p>예: 수원(水源) 시설공사, 취수(取水) 시설공사, 도수(導水) 시설공사, 정수(淨水) 시설공사, 배수(配水) 시설공사, 배수(排水) 시설공사, 기타 상수도 시설공사</p> <p>※ 수원시설공사 중의 『땀』 공사는 512012에, 부대건축공사는 511005에 분류한다.</p>
	512009	하수도시설공사	<p>예: 도수(導水) 시설공사, 배수(排水) 시설공사, 양수(揚水) 시설공사, 측구(側溝) 시설공사, 오물처리(汚物処理) 시설공사, 부개(覆蓋) 공사, 기타 하수도 시설공사.</p> <p>※ 부대건축공사는 511005에 분류한다.</p>
	512010	발전·송전·변전·배전	<p>예: 수력발전시설공사, 화력발전시설공사, 원자력발전시설공사</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發電 · 送電 變電 · 配電) 시설공사	송전시설공사, 변전시설 공사, 배전시설공사. ※ 수력발전시설공사 중의 『땀』공사는 512012에 송전소 · 변전소 · 배전소 등의 건축공사 는 51105에 분류한다.
	512011	토지조성 (土 地造成) 공원 운동경기장시 설공사	예 : 매립 (埋立) 공사, 정지 (整地) 공사 법면보호 (法面保護) 공사, 배수시설 (排水施設) 공사 급수시설 (給水施設) 공사, 기타 토지조성공사, 공원시설공사, 운동 경기장 시설공사, ※ 항만공사, 간척공사에 속 하는 매립 (埋立) 공사는 여기에 서 제외한다. 공원, 운동경기장, 시민체 육관, 경마장, 유원지, 동물원, 식 물원 등에 부속되는 건축물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학교와 주택 에 부속된 운동장과 유원지도 제외한다.
	512012	땀공사	예 : 가체절 (假縮切) 공사, 가배수로 (假排水路) 공사, 공사용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p>도로공사, 기초굴착 (基礎掘鑿) 공사, Grouting 공사, 『땀』 축조 공사, 여수로 (餘水路) 공사, 방수로 (防水路) 공사, 기계설치공사, 기타 『땀』 시설공사</p> <p>예 : 기초공사, 교각 (橋脚) 공사, 상부 (上部) 공사, 기타 철강교 가설공사</p>
512013		철강교 (鐵鋼橋) 시설공사	
512014		준설 (浚渫) 공사	
512015		색도 (索道) 설치공사	
512016		도로포장 (道路鋪裝) 공사	
512017		기타토목공사	<p>예 : 『터널』 공사, 해저 『터널』 공사, 기중기 (檢重機) 설치공사, 『에스카레타』 설치공사, 운하공사, 기타의 중건설공사.</p> <p>※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토목공사는 여기에 분류한다.</p>
5210	521001	벽돌·부록·미장·토공공사	<p>예 : 벽돌쌓기공사, 미장공사 토공 (土工) 공사 등</p>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5220	522001	목공공사	
5230	523001	철강공사	예 : 철골 (鐵骨) 공사, 철근 (鐵筋) 공사, 판금 (鍛金) 공사, 금속제 샷슈공사, 비상계단공사, 주강공사, 기타 철강공사.
5240	524001	석축, 타일, 기와공사	예 : 석축 (石築) 공사, 『타일』공사, 『기와』공사, 『스레이트』공사.
5250	525001	도장 (塗裝) 공사	예 : 도장공사, 시멘트빚어붙이기 (灰付) 공사, 단청공사.
5260	526001	전기·통신공사	예 : 송배전전선로 (送配電電線路) 공사, 전기설비공사, 전기배선 (配線) 공사, 『네온』공사, 전화선로공사, 통신토목공사, 유선무선전화기계설비 설치공사, 전신기계설치공사, 신호장치공사, 화재경보기 설치공사, 기타 전기설비, 통신, 신호장치공사.
5270	527001	배관공사	냉난방 (冷暖房) 시설공사, 온도조절장치공사, 건조 (乾燥) 장치공사, 냉동·냉장 및 제빙장치공사, 급배수 (給排水) 설비공사,

산업세분류	공종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290	529001	기타 전문직 공사업	소화 (消火) 설비공사 위생설비공사 기타 배관공사 굴뚝설치공사 열절연 (熱絶緣) 공사 승강기 (乘降機) 설치공사 수진 (收塵) 장치공사 내장 (内裝) 공사 도배공사 유리공사 온돌 (溫突) 공사 잠수 (潜水) 공사 조원공사 지붕공사 비계 (飛階) 공사 창호공사 축로공사 『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레미콘』공사 방수 (防水) 공사 기타 전문직공사